

2025년 세입 예산안

NO	관	항	목	세목	자금원천	예산액	산출근거						
1	입소자(이용자)부 담금수입	입소(이용)비용수입	본인부담금수입	본인부담금수입	[06] 수익사업	144,735,900	=	14,473,590	X	10	월	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※ 원월 29원 1등급 : 12.9% 2등급 : 28.1% 3등급 : 59% 기준 본인부담금수입(20%)	
2	입소자(이용자)부 담금수입	입소(이용)비용수입	식재료비수입	식재료비수입	[06] 수익사업	93,987,500	=	9,398,750	X	10	월	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 수납 비용 ※ 원월 29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1일(식비+간식비) 10,000원	
3	입소자(이용자)부 담금수입	입소(이용)비용수입	상급침실이용료	상급침실이용료	[06] 수익사업	18,000,000	=	1,800,000	X	10	월	비급여대상 중 상급침실료	
4	입소자(이용자)부 담금수입	입소(이용)비용수입	이미용비	이미용비	[06] 수익사업	-	=		X	10	월	비급여대상 중 이용·미용비	
5	입소자(이용자)부 담금수입	입소(이용)비용수입	기타비급여수입	기타비급여수입	[06] 수익사업	5,000,000	=	500,000	X	10	월	비급여대상 중 식재료비, 이용·미용비를 제외한 비급여	
6	사업수입	사업수입	사업수입	사업수입	[06] 수익사업	-	=		X	10	월	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 (예: 입소자(이용자)가 제작한 물품 판매 수입)	
7	과년도수입	과년도수입	과년도수입	과년도수입	[06] 수익사업	-	=		X	10	월	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	
8	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국고보조금	국고보조금	[07] 보조금	-	=		X	10	월	국가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	
9	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시도보조금	시도보조금	[07] 보조금	-	=		X	10	월	시·도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	
10	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시군구보조금	시군구보조금	[07] 보조금	15,116,768	=	1,511,677	X	10	월	시·군·구로부터 받은 경상보조금 및 자본보조금 ※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월동대책비 특별위로금	
11	보조금수입	보조금수입	기타보조금	기타보조금	[07] 보조금	-	=		X	10	월	그 밖에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사업 기금 등에서 공모사업 선정으로 받은 보조금	
12	후원금수입	후원금수입	지정후원금	지정후원금	[05] 후원금	-	=		X	10	월	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·결연후원금·위문금·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	
13	후원금수입	후원금수입	비지정후원금	비지정후원금	[05] 후원금	-	=		X	10	월	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·결연후원금·위문금·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생긴 수입	
14	요양급여수입	요양급여수입	장기요양급여수입	장기요양급여수입	[06] 수익사업	578,698,600	=	57,869,860	X	10	월	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수입 ※ 원월 29원 1등급 : 12.9% 2등급 : 28.1% 3등급 : 59% 기준 장기요양급여수입(80%)	
15	요양급여수입	요양급여수입	장기요양급여수입	장기요양급여수입(미반영)	[06] 수익사업	500,000	=	50,000	X	10	월	코로나 방역지원금 외	
16	요양급여수입	요양급여수입	가산금 수입	가산금 수입	[06] 수익사업	25,000,000	=	2,500,000	X	10	월	노인장기요양보험 가산금 수입 ※ 인력추가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직원배치 등 가산금액 = 해당 월 가산 기준금액 × [가산점수의 합/입소자수] × 서비스유형점수	
17	요양급여수입	요양급여수입	가산금 수입	가산금 수입(미반영)	[06] 수익사업	12,000,000	=	1,200,000	X	10	월	맞춤성서비스·조리원	
18	차입금	차입금	금융기관차입금	금융기관차입금	[04] 자부담	-	=		X	10	월	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(운영비 부족 차입금) 차입금사전신고서 제출	
19	차입금	차입금	기타차입금	기타차입금	[04] 자부담	-	=		X	10	월	개인·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(운영비 부족 차입금) 차입금사전신고서 제출	

2025년 세입 예산안

NO	관	항	목	세목	자금원천	예산액	산출근거						
20	전입금	전입금	법인전입금	법인전입금	[04] 자부담	-	=		X	10	월	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한다)	
21	전입금	전입금	법인전입금(후원금)	법인전입금(후원금)	[05] 후원금	-	=		X	10	월	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(후원금)	
22	전입금	전입금	기타전입금	기타전입금	[04] 자부담	552,000,000	=	55,200,000	X	10	월	기타 법인, 개인 등 설치·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	
23	전입금	전입금	기타전입금(후원금)	기타전입금(후원금)	[05] 후원금	-	=		X	10	월	기타 법인, 개인 등 설치·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(후원금)	
24	이월금	이월금	전년도이월금	전년도이월금	[04] 자부담	100,000	=		X	10	월	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	
25	이월금	이월금	전년도이월금(후원금)	전년도이월금(후원금)	[05] 후원금	-	=		X	10	월	전년도에 후원금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	
26	이월금	이월금	전년도이월금(식재료비)	전년도이월금(식재료비)	[06] 수익사업	100,000,000	=		X	10	월	전년도 식재료비수입에 대한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	
27	이월금	이월금	이월사업비	이월사업비	[04] 자부담	-	=		X	10	월	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사업의 이월된 금액	
28	잠수입	잠수입	불용품매각대	불용품매각대	[04] 자부담	-	=		X	10	월	비품·집기·기계·기구 등과 그 밖의 불용품의 매각대	
29	잠수입	잠수입	기타예금이자수입	기타예금이자수입	[04] 자부담	50,000	=	5,000	X	10	월	기본재산예금 외의 예금이자 수입	
30	잠수입	잠수입	직원식재료수입	직원식재료수입	[04] 자부담	6,000,000	=	600,000	X	10	월	직원으로부터 수납하는 식재료비 수입 기관이 부담하는 직원식재료비 지원금	
31	잠수입	잠수입	기타잠수입	기타잠수입	[04] 자부담	1,000,000	=	100,000	X	10	월	그 밖의 재산매각수입,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 코로나 19 관련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등	
32	적립금및준비금 (특별회계)	운영충당적립금및환경 개선준비금	운영충당적립금	운영충당적립금	[06] 수익사업	X	=	X	X	10	월	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세출되어(911목) 적립 된 금액(특별회계)	
33	적립금및준비금 (특별회계)	운영충당적립금및환경 개선준비금	시설환경개선준비금	시설환경개선준비금	[06] 수익사업	X	=	X	X	10	월	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(이용자)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세출되어(912목) 적립된 금액(특별회계)	
합계						1,552,739,568							

2025년 세출 예산안

NO	관	항	목	세목	자금원천	예산액	산출근거						
1	사무비	인건비	급여	급여(직접비)	수익사업	470,093,424	=	47,009,342	X	10	월	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(기말·정근수당을 포함한다) ※ 직접인건비 총사자 16명	
2	사무비	인건비	급여	급여(간접비)	수익사업	118,963,464	=	11,896,346	X	10	월	시설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(기말·정근수당을 포함한다) 간접인건비 ※ 간접인건비 총사자 3명	
3	사무비	인건비	각종수당	각종수당(직접비)	수익사업	39,126,528	=	3,912,653	X	10	월	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(직중·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·야간근무수당·휴일근무수당 등) 및 그 밖의 수당 ※ 직접인건비 총사자 16명	
4	사무비	인건비	각종수당	각종수당(간접비)	수익사업	2,191,776	=	219,178	X	10	월	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각종 수당(직중·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·야간근무수당·휴일근무수당 등) 및 그 밖의 수당 ※ 간접인건비 총사자 3명	
5	사무비	인건비	임용잡급	임용잡급(직접비)	수익사업	-	=	-	X	10	월	임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	
6	사무비	인건비	임용잡급	임용잡급(간접비)	수익사업	-	=	-	X	10	월	임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	
7	사무비	인건비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(직접비)	수익사업	34,420,200	=	3,442,020	X	10	월	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(충당금) ※ 직접인건비 총사자 16명 X 약8.333%	
8	사무비	인건비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	퇴직금 및 퇴직적립금(간접비)	수익사업	10,092,120	=	1,009,212	X	10	월	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(충당금) ※ 간접인건비 총사자 3명 X 약8.333%	
9	사무비	인건비	사회보험부담금	사회보험부담금(직접비)	수익사업	51,195,840	=	5,119,584	X	10	월	시설직원의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)부담금 ※ 직접인건비 총사자 16명 X 약10.462%	
10	사무비	인건비	사회보험부담금	사회보험부담금(간접비)	수익사업	12,617,040	=	1,261,704	X	10	월	시설직원의 사회보험(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 등)부담금 ※ 간접인건비 총사자 3명 X 약10.462%	
A	사무비	인건비	각종수당	인건비	수익사업	-	=	-	X	10	월	코호트 격리에 따른 종사자 연장근로 발생 및 업무 강도 강화 등에 따른 보상 지원	
11	사무비	업무추진비	기관운영비	기관운영비	수익사업	3,000,000	=	300,000	X	10	월	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, 직무교육 지원 * 직원교육 : 17,000(원)*16(명)*2회 = 544,000원 * 직무역량강화교육 : 17,000(원)*16명*1회=272,000원 * 소방안전관리자 보수교육 : 85,000(원)* 2명*1회=170,000원 * 승강기 안전점검 보수교육 : 50,000(원)*2명*1회=100,000원 * 보수교육 지원 : 간호조무사 65,000원 / 물리치료사 120,000원 / 사회복지사 56,000원 / 요양보호사 36,000원	
12	사무비	업무추진비	기관운영비	기관운영비	자부담	-	=		X	10	월	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드는 각종 경비, 직무교육 지원	
13	사무비	업무추진비	직책보조비	직책보조비	수익사업	-	=		X	10	월	시설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	
14	사무비	업무추진비	회의비	회의비	수익사업	-	=		X	10	월	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	
15	사무비	운영비	여비	여비	수익사업	-	=		X	10	월	시설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, 교육비	
16	사무비	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	수용비 및 수수료	수익사업	36,000,000	=	3,600,000	X	10	월	사무용품비·인쇄비·집기구입비(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)·도서구입비·공 고료·수수료·등기료·운송비·통행료 및 주차료·소규모수선비·포장비 등 *침대시트교체 : 40,000원*50개=2,000,000원 *세제구입비 : 100,000원*12월=1,200,000원 *청소용품 구입비 : 250,000원*2회=500,000원 *종량제 봉투 : 130,000원*12월=1,560,000원	
17	사무비	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	수용비 및 수수료	자부담	-	=		X	10	월	사무용품비·인쇄비·집기구입비(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)·도서구입비·공 고료·수수료·등기료·운송비·통행료 및 주차료·소규모수선비·포장비 등	

18	사무비	운영비	수용비 및 수수료	수용비 및 수수료	후원금		-	=		X	10	월	사무용품비·인쇄비·집기구입비(물건의 성질상 장기간 사용 또는 고정자산으로 취급되는 집기류는 212목에 계상)·도서구입비·공 고료·수수료·통기료·운송비·통행료 및 주차료·소규모수선비·포장비 등
----	-----	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	--	---	---	--	---	----	---	--

2025년 세출 예산안

NO	관	항	목	세목	자금원천	예산액	산출근거						
19	사무비	운영비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 과금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 과금	수익사업	28,000,000	=	2,800,000	X	10	월	우편료 · 전신전화료 · 전기료 · 상하수도료 ·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(자동차세 등), 협회가입비, 화재 · 자동차보험료, 그 밖의 보험료	
20	사무비	운영비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 과금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 과금	자부담	-	=		X	10	월	우편료 · 전신전화료 · 전기료 · 상하수도료 ·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(자동차세 등), 협회가입비, 화재 · 자동차보험료, 그 밖의 보험료	
21	사무비	운영비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 과금	공공요금 및 각종 세금공 과금	후원금	-	=		X	10	월	우편료 · 전신전화료 · 전기료 · 상하수도료 · 가스료 및 오물수거료 및 법령에 따라 지급하는 각종 세금(자동차세 등), 협회가입비, 화재 · 자동차보험료, 그 밖의 보험료	
22	사무비	운영비	차량비	차량비	수익사업	7,000,000	=	700,000	X	10	월	차량유류대 · 차량정비유지비 · 차량소모품비	
23	사무비	운영비	임차료	임차료	수익사업	-	=		X	10	월	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건물,토지 등에 대하여 지불한 임차료	
24	사무비	운영비	기타운영비	기타운영비	수익사업	14,500,000	=	1,450,000	X	10	월	시설직원 건강진단비, 그 밖의 복리후생에 드는 비용, 상용의류비,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않은 경비 *명절선물 구입 : 100,000원*20명*2(설, 추석)=4,000,000원 *직원특수건강검진비 : 45,000(원)*18명 = 5,000,000원 *회계관리 : 400,000원*12월 = 4,800,000원 *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<영와의 날> · 영화관람권 : 15,000(원)*20(명)=300,000원 · 식사비 지원 : 15,000(원)*20(명)=300,000원	
25	사무비	운영비	기타운영비	직원식재료비지원금	수익사업	6,000,000	=	600,000	X	10	월	기관에서 지원하는 직원 식대비	
26	재산조성비	시설비	시설비	시설비	수익사업	15,000,000	=	1,500,000	X	10	월	시설 개보수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부대경비 *외벽보수 및 도장 :3,000,000원 *노후된 전통집대 리모델링 : 350,000(원)*20베드=7,000,000원 차장 입구 대문설치 : 5,000,000원	
27	재산조성비	시설비	자산취득비	자산취득비	수익사업	55,000,000	=	5,500,000	X	10	월	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, 토지·건물 그 밖에 자산의 취득비	
28	재산조성비	시설비	시설장비유지비	시설장비유지비	수익사업	3,600,000	=	300,000	X	10	월	건물 및 건축설비(구축물 · 기계장치), 공구 · 기구, 비품수선비(소규모수선비는 132목에 계상) 그 밖의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*소방직통기능검사 : 400,000원*1회 = 400,000원 *소방종합정밀점검 : 450,000원*1회 = 450,000원 *승강기 안전 점검 : 80,000원*12월=960,000원 *월 전기안전점검 : 100,000원*12월=1,200,000원 *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: 150,000원*1회=150,000원	
29	사업비	운영비	생계비	생계비	수익사업	193,987,500	=	19,398,750	X	10	월	주식비, 주식비, 특별부식비, 장유비, 필동용 검장비 *간식제공 : 1,000(원)*29명*30일*12개월=10,440,000원	
30	사업비	운영비	생계비	생계비	자부담	6,000,000	=	600,000	X	10	월	주식비, 주식비, 특별부식비, 장유비, 필동용 검장비(직원식재료비)	
31	사업비	운영비	생계비	생계비	보조금	15,116,768	=	1,511,677	X	10	월	주식비, 주식비, 특별부식비, 장유비, 필동용 검장비 [보조금(특별위로금 및 필동대책비 포함)]	
32	사업비	운영비	수용기관경비	수용기관경비	수익사업	12,212,000	=	1,026,000	X	10	월	임시자(이용자)를 위한 수용비(차약 · 컵술 · 수건 구입비 등) 창결용품 구입비 : 250,000원*2회=500,000원 *차약구입비 : 1,000원*50개*2회=100,000원 *가글구입비 : 10,000원*30개*2회=600,000원 *목욕용품 : 10,000원*29명*2회=580,000원 *보습용품 : 14,000원*29명*2회=812,000원 *기저귀 및 패드 구입비 :800,000원*12월 =9,600,000원 *경관영양 물품비 : 100,000원*12월=120,000원	

33	사업비	운영비	의료비	의료비	수익사업	2,000,000	=	200,000	X	10	월	입소자(이용자)의 보건위생 및 식약대(施藥代) *입소자 건강검진 : 25,000(원)*29명=725,000원 *구강예 방집종 : 20,000원*29명=580,000원 *구충제복 용 : 2,000(원)*29명=58,000원 *월당측정검사 지 : 30,000원/100(매)*12(개월)=360,000원 *응급용품, 상비 약, 압박붕대 : 500,000원
34	사업비	운영비	장의비	장의비	수익사업	-	=		X	10	월	입소자(이용자) 중 사망인을 위한 장의비
35	사업비	운영비	연료비	연료비	수익사업	-	=		X	10	월	연료비
36	사업비	사업비	프로그램 사업비	프로그램 사업비	수익사업	11,000,000	=	1,100,000	X	10	월	의료재활, 사회심리재활 등 입소자(이용자)를 위한 프로그램운영비 *산책나들이 : 100,000원*4회=400,000원 *외부프로그램 :800,000원*12개월=8,600,000원 *특식프로그램(특식구입비): 800,000원 *생신잔치 : 200,000원*4회=800,000원 *어버이날 행사 : 150,000원 *기타프로그램 : 200,000원
37	전출금	전출금	법인회계전출금	법인회계전출금	수익사업	-	=		X	10	월	법인회계로의 전출금 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
38	전출금	전출금	기타전출금	기타전출금	수익사업	260,000,000	=	26,000,000	X	10	월	사회복지법인 이외의 법인, 개인 등 설치·운영자로의 전출금 설치 전 부채에 대한 이자지불금 등
39	과년도지출	과년도지출	과년도지출	과년도지출	수익사업	-	=		X	10	월	과년도미지급금 및 과년도사업비의 지출
41	상환금	부채상환금	원금상환금	원금상환금	수익사업	-	=		X	10	월	차입금원금상환금
42	상환금	부채상환금	이자지불금	이자지불금	수익사업	130,000,000	=	13,000,000	X	10	월	차입금이자지급금

2025년 세출 예산안

NO	관	항	목	세목	자금원천	예산액	산출근거						
43	잡지출	잡지출	잡지출	잡지출	수익사업	1,824,868	=		X	10	월	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·사례금·소송경비, 과태료, 과징금 등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 지원금의 배분 등	
44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	예비비	수익사업	14,498,040	=	1,449,804	X	10	월	예비비	
45	예비비 및 기타	예비비 및 기타	반환금	반환금	수익사업	-	=		X	10	월	정부보조금 반환금	
46	적립금 및 준비금	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부담금	운영충당적립금	운영충당적립금	수익사업	-	=		X	10	월	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적립금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
47	적립금 및 준비금	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부담금	시설환경 개선준비금	시설환경 개선준비금	수익사업	-	=		X	10	월	입소자(이용자)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한 시설환경개선 준비금(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)	
48	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(특별회계)	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지출	운영충당적립금 지출	운영충당적립금 지출	수익사업	X	=	X	X	10	월	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운영충당적립금(1111목)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(특별회계)	
49	적립금 및 준비금 지출(특별회계)	운영충당적립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지출	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지출	시설환경개선 준비금 지출	수익사업	X	=	X	X	10	월	세입계정으로 적립된 시설환경개선준비금(1112목) 중 노인장기요양기관 입소자(이용자)에 대한 시설이미지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(특별회계)	
합계						1,552,739,568							

